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22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5년 03월 26일 (수) 오전 09시 3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4, 엠스테이트A동 202호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
(※ 대표문의전화 : 02-3400-0525)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5기(2024.1.1 ~ 2024.12.31)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250원)
※ 상기 제1호 의안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경숙 선임의 건(이사회)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 이승호 선임의 건(이사회)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개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주주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여러명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한 주주 전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금번 주주총회는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5년 03월 11일

주식회사 이퓨쳐

대표이사 이기현 (직인생략)

[별첨]

제 2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당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인 3,576,937,500원을 초과하므로, 상법 제 461조의 2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2,500,000,000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제 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5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제55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반영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분기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주석 신설)	※ 회사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특정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4월 ○일, 7월 ○일 및 10월 ○일 현재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금은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주석 신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③ 좌동	

5.「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④ 좌동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제 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경숙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최종학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국적
김경숙	1959-12-23	3년	재선임	(주)이퓨쳐 개발이사	UCLA 화학박사	타인	이사회	대한민국

제 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5-1호 의안 : 사외이사 이승호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최종학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국적
이승호	1961-02-21	3년	재선임	(주)포틴앤컴퍼니 대표이사	일리노이주립대 Computer Science 석사	타인	이사회	대한민국

제 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의 건

(단위 : 원)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3)	7(3)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200,000,000	1,300,000,000

위 임 장

본인은 2025년 03월 26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이퓨쳐의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아래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 주 번 호 : **2. 소유 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주**

5. 수임인 : **대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6.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의안 : 제25기(2024.01.01 ~ 2024.12.3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250원)			
제2호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제3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4-1 호 의안 : 사내이사 김경숙 선임의 건(이사회)		
제5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5-1 호 의안 : 사외이사 이승호 선임의 건(이사회)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의 건			

※ 상기 제1호 의안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7.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위임 일자 및 위임 시간 : 2025 년 월 일 시